

의안번호	2210778
의 퇴 인	김태년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5.
추 계 번호	25A319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(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	○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. 이 경우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(제3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5조(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15조에 따라 법 제16조의5¹⁾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

- 1)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5(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)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.
- ② 송전계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송전계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1. 송전계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
 2.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
-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,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계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.

에게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(최초 60개월),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다만 개정안의 지원대상자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는 2023년 6월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,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거래 실적은 없어 개정안의 이용요금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2023년 신규 계약자(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)의 최초 12개월 요금은 2억 4,810만원, 최초 12개월 이후 12개월은 4,060만원 규모이며, 2024년 신규 계약자의 최초 12개월 요금은 6억 3,860만원 수준임

[표 1]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, VAT 별도)

구 분	최초 12개월 (1~12개월)	최초 24개월 (13~24개월)	최초 36개월 (25~36개월)	최초 48개월 (37~48개월)	최초 60개월 (49~60개월)
2023년 신규 계약자	248.1*	40.6	—	—	—
2024년 신규 계약자	638.6	—	—	—	—

주: 1. 2023.6 ~ 2024.12월까지 납부한 송배전이용요금 기준으로 작성

*'23년 신규 계약자(27개) 중 20개는 '23.12.31일에 이용계약을 체결, '23년 12월 납부한 송배전이용요금이 미미하여, '24년 납부한 송배전이용요금을 최초 12개월 송배전이용요금으로 간주하여 산정
자료: 한국전력공사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